

삼척도계2단지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

◆ 공급위치 및 세대수: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225번지 일원의 **280세대**

알려드립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1.11.18(금)**입니다.(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자산보유 등의 판단기준일임)
- ■이 공고문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팜플렛은 2011.11.18(금)부터 배포합니다.
 - ※ 팜플렛 배포처: LH 건설현장 내 분양상담실(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225번지)
- 방문접수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청약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청약을 위하여 미리 청약통장 가입은행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여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명단관리 등 불이익을 받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합니다.
- "무주택세대주"는 세대주를 포함한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이 공고문에서 언급되는 「주택소유여부 판단대상」, 「부양가족」, 「부동산 및 자동차 자산보유 기준」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인 세대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을 말합니다.
- 신청접수시(인터넷, 방문접수)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신청자의 신청자격(거주지역, 재당첨제한 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되더라도 계약시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불가, 통장효력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명단관리 등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상 청약자격, 신청시 확인사항, 일정, 유의사항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제한 등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등(전용 85㎡이하 주택)이며,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재당첨제한 적용 대상입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당첨된 자 및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포함)는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계약체결 불가, 당첨자명단관리, 청약통장을 사용한 경우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따라 과거 특별공급(과거 다자녀 및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자는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정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1항제3호, 제4호,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한자 포함)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의거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3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도 당첨자에 해당)

1

부동산 및 자동차 자산보유 기준

- ■적용대상: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제1・3순위)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당첨자(당첨자의 세대원 포함)에 한하여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당첨 시 계약불가, 통장효력 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
- 부동산(토지+건물) 및 자동차 자산보유 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					
				구 분		가액산정 기준		
				단독취	주택 -	공시가격		
		건물	주거용건물	공동2	주택	공시가격		
		U Z	171022	오피스	스텔	시가표준액 (부속토지가액 포함)		
			비주거용건물	공장, 상가	건물	시가표준액		
부동산	215 500 0009		기구기하신길	(오피스텔)	부속토지	개별공시지가		
(토지+건물)	215,500,000원 이하	토지	가를 곱한 금액. - 「농지법」제23 읍 · 면장이 관 - 공부상 도로, 7 - 종중소유 또는 저히 제한을 받	단, 아래 토지는 7 조에서 정한 농지를 리하는 농지원부0 ² 거, 하천 등 공공 문화재가 건립된 는 경우로서 입주 디가액이 포함되지	테외 로서 같은 법률 네 동일한 농업인 용지로 사용되는 토지 등 해당 ! (예정)자가 구체 않는 비주거용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 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경우		
자동차	26,825,000원 이하	취득가액(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에서 경과년수(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함 단, 자동차는「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						

- 부동산(건물 및 토지)의 경우 세대주(신청자),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비속[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 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의 총합임
- 자동차의 경우 세대주(신청자),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비속[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차량이 대상임
- 부동산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 취득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세대원간에 지분 공유시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 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보유자산 확인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해당하여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그 주택과 해당주택의 부속토지도 자산기준을 적용함
- 자산보유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확인함
 - 토지·주택 공시지가 등 확인방법

 - 1. 토지가 속한 해당 시, 군, 구청에서 조회가능 2. 국토해양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or.kr) ♀ 토지 ⇨ 개별공시지가 열람 ⇨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이용
 - 3. 전자민원 G4C(www.egov.go.kr) ⇒ 민원신청 ⇒ 개별공시지가 확인 ⇒ 신청
 - 자동차가액 산정 : 자동차가액 = 취득가액 X { 1- (0.1 X 경과년수) }
 - ※ 자동차 취득가액 확인방법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 가격(부가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가 안되어 있는 경우
 - 취·등록세납부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 ※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11년식 자동차를 2010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취득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분양사무실 안내

- 분양사무실 위치 :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225번지
 - 분양사무실은 2011.11.18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운영하며, 직원은 청약접수, 당첨자 서류제출, 계약체결 기간만 상주합니다.
 - ※ 분양상담실내에 견본주택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과거 주택당첨사실 조회방법(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포함)

금융결제원 주택청약 관련업무 홈페이지(www.apt2you.com) 접속 ⇨ 인터넷청약 개인고객 ⇨ 당첨사실조회 ⇨ 과거당첨사실조회 ⇨ 주택청약 LOG-IN(공인인증 확인) ⇨ 조회기준일 입력 ⇨ 조회

※ 신청자 본인 및 세대에 속한 자는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검색하여야 함

임차권 양도·전대금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동 법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함
- 자세한 사항은 「임대주택법」 제19조 등을 참조하시기 바람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공통사항

- 1세대 1건만 신청가능하며 세대주(신청자)의 중복청약 또는 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표등본 상 분리된 배우자가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당첨자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청약통장을 사용한 경우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특별공급 신청자는 향후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자격으로 신청 불가)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특별공급 1건, 일반공급 1건 중복신청이 가능(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제외)하며, 중복당첨된 경우 특별공급 당첨만 인정함
- ■기관추천,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다자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시 모두 부적격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청약통장을 사용한 경우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향후 다른주택에 특별공급자격으로 신청 불가)
-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당첨자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향후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자격으로 신청 불가)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의함

세대주 인정기간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1항 및 제2항)

- ■세대주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함. 단,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기간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세대주인정기간을 산정
 - 1.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말소 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해당시설 거주기간
-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이후의 기간에 한정함)을 변경 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함. 단, 결혼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주 인정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한 번만 계산함
 - 1.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 2.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 3.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 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

- ■(주택소유여부 판단대상) 신청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제6호는 적용하지 않음)
 -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규칙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 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 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 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을 유주택으로 봄 6.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 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 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무허가건물의 의미)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건축물(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 층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공급내역

- •전 주택형의 발코니는 확장형으로 시공됨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건립동별 최상층 층수임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 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임
-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로 표기하였음
- •각 신청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 처리됨
- 난방방식은 개별가스난방(집단공급방식),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시공됨
- 아파트 12~15층 5개동 280세대(입주예정시기 : 2013. 11월)

		세대	내당 주택면	!적(㎡)		대지				공	급세대수	<u>-</u>				-1-
주택형	주거		공용면적		711.01	지분					특별공급				-1	입주 예정
1 10	전용	주거공용	그밖의	공용면적	계약 면적	(m²)	계	지구 철거 세입자	기관		노 부 모	0 "	신혼	국가유	일반 공급	시기
		T/IOO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 J			세입자	추천	가구	부양	최초	부부	공자	01	
			합 계				280	135	14	14	7	29	22	13	46	
059.7500A	59.75	24.8741	6.2268	16.7318	107.5827	50	65	17	6			8	6	4	24	
059.7500B	59.75	25.2641	6.2268	16.7318	107.9727	51	57	23	2	2		8	7	4	11	
059.7500C	59.75	25.0741	6.2268	16.7318	107.7827	50	23	17					5		1	
059.9900D	59.99	25.5463	6.2519	16.7990	108.5872	51	23	17	1			3	1		1	'13.11
074.9100A	74.91	30.8964	7.8067	20.9771	134.5902	63	50	31	1	3	1	4	3	2	5	
074.9800B	74.98	31.1103	7.8140	20.9967	134.9010	63	15	2	1	3	4	2		2	1	
084.8000A	84.80	34.9937	8.8374	23.7466	152.3777	72	26	17	2	2		2		1	2	
084.9500B	84.95	35.5450	8.8531	23.7886	153,1367	72	21	11	1	4	2	2			1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 임대기간 : 10년

- •이 주택은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임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 차계약을 갱신함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주택 형		월임대료(원)		
Täs	합 계	계약금(계약시)	잔금(입주시)	걸음네표(전/
059.7500A, 059.7500B, 059.7500C, 059.9900D	21,000,000	4,200,000	16,800,000	245,000
074.9100A, 074.9800B	23,000,000	4,600,000	18,400,000	333,330
084.8000A, 084.9500B	32,000,000	6,400,000	25,600,000	333,330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의 임대조건으로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동별·충별·항별·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음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 시에 반환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가격을 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이 없음

주택형	계(천원)	건축비(천원)	택지비(천원)
059.7500A	103,238	100,616	2,622
059.7500B	103,629	100,995	2,634
059.7500C	103,438	100,810	2,628
059.9900D	104,205	101,555	2,650
074.9100A	127,765	124,487	3,278
074.9800B	128,065	124,778	3,287
084.8000A	145,686	141,975	3,711
084.9500B	146,422	142,689	3,733

·금회 공급대상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세대당 5,500만원~7,500만원)하며, 융자 지원된 국민주택기금이 분양전환 계약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 및 이율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 전환보증금 안내

주택형	최대추가납부 가능금액(원)	최대 추가납부시 월임대료 차감액(원)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시 임대보증금(원)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시 월임대료(원)
059.7500A, 059.7500B, 059.7500C, 059.9900D	17,000,000	113,330	38,000,000	131,670
074.9100A, 074.9800B	24,000,000	160,000	47,000,000	173,330
084.8000A, 084.9500B	21,000,000	140,000	53,000,000	193,330

-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하며, 전환요율은 현재 8%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할 예정임
-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전환신청, 수정계약체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추후 개별안내 하여 드림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분양전환대상자 : 임대주택법 제21조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 「임대주택법시행 규칙」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2.나목"을 적용함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총당금 범위 내)

입주금 납부안내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돌려드림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현행 연8.5%)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 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1.11.18) 현재 삼척시 거주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해당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추천한 자

추천대상자	청약통장 구비여부
• 지자체철거민(철거세입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청약통장 필요없음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다문화가족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 납북피해자, 군인, 우수기능인, 공무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제1항 및 제12항에 따른 기관추천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통보한 자를 대상으로 청약접수 및 당첨자를 선정함
-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천장을 방문하여 청약신청 하여야 함(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주택의 동·호수 배정은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함
- 별도의 예비입주자는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된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 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1.11.18) 현재 삼척시 거주 만20세 미만 (1991.11.19일 이후 출생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①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동산(토지+건물)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공고문 상단의 「부동산 및 자동차 자산보유 기준」참조)

■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자에게 건설량의 10% 범위내에서 특별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함
- ・신청주택의 동・호수 배정은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함
- •별도의 예비입주자는 선정하지 않으며 부적격당첨자의 동 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2.57	유민화도		기 준	점수	91 ×				
계		100							
	미성년	40	4자녀 이상	40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1991.11.19 일 이후 출생자)인 경우만 포함(영유아포함)				
자녀수 (1)	자녀	40	3자녀	35	일 이후 출생자)인 경우만 포함(영유아포함)				
(1)	영·유아	10	2명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πч	10	1명	5					
세대구			3세대 이상	10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 				
(2)		10	2세대	5	·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				
무주	주택		세대주 나이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 ⁵ 기 : (3)	간	20	세대주 나이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름(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도 거주 기간 (4)						10년 이상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5년 이상~10년 미만	15	기간				
(4)			1년 이상~5년 미만	10	※ 주민등록등본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			1년 미만	5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1),(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국토해양부 등 주택소유전산검색으로 확인 (4)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 동점자 처리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입주자모집공고일(2011.11.18) 현재 삼척시 거주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 4가지 모두에 해당되는 자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 ※ 출산은 기본증명서(출생신고일),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 임신은 임신진단서, 입양은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 등으로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청약이 제한됨(출산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서류 제출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재혼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출산한 자녀가 없을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음

- ②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자
 - * '가구당 소득'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전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의 합산 소득이며,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만20세 이상 직계 존·비속 소득도 합산(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동산(토지+건물)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공고문 상단의 「부동산 및 자동차 자산보유 기준」참조)
- ④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201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구 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4,007,671원이하	4,447,007원이하	4,709,765원이하	5,060,812원이하	5,411,859원이하	5,762,906원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4,809,205원이하	5,336,408원이하	5,651,718원이하	6,072,974원이하	6,494,231원이하	6,915,487원이하

- ※ 8인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5,762,906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351,047원) 추가
- ※ 소득적용은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21번 항목) 또는 2010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소득금액을, 금년도 신규취업자 및 금년도 전직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무지의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의 소득금액을 적용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소득을 적용(단, 전년도 소득금액 자료가 확정전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적용)
- ※ 전년도 전직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무처별 소득명세표' 상 '주(현)'총급여금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 휴직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와 다른 경우 및 근로기간이 1개월이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등은 정 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의 소득을 추정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단,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 시 임신 중인 경우 태아는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종교기관(교회, 사찰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신청자의 명의로 사업자(법인) 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본인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사업소득과 법인 인감이 날인된 소득 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조서 등)로 근로소득을 확인한 후 두 소득액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 소득관련 증빙서류는 「소득입증 증빙서류」를 참조하고 기타 소득관련 사항은 국토해양부의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조회방법 : 국토해양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지침조회)

■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주택의 동·호수 배정은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함
- •별도의 예비입주자는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된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 · 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 급함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당첨자 선정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당첨자 선정순위

순 위	해당사항							
1순위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한 자를 포함)한 자녀가 있는 자							
2순위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한 자를 포함)한 자녀가 있는 자							
※ 동일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에	※ 동일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함							
① 미성년 자녀 수(태아포함)가 많은 자								
② 미성년 자녀 수(태아포함)기	l 같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자녀수 산정방법(아래 1과 2를 합산)
- 1. 입주자모집공고일(2011.11.18)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혼인 기간 내에 출산(임신중이거나 입양한 자를 포함)한 자녀
- 2.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단,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 임신중인 다태아의 경우 모두 자녀로 인정(임신사실 확인 : 임신진단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1.11.18) 현재 삼척시 거주 무주택세대주 아래 6가지 모두를 만족하는 무주택세대주
- ①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1순위(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는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④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00퍼센트 이하인 자
 - ※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만20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도시근로자 기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기준은 기구원수에 따라 차등적용
 - ※ '가구당 소득'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전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의 합산 소득이며,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만20세 이상의 직계 존·비속의 소득도 합산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여부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며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 여부 포함)
- ⑥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동산(토지+건물)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공고문 상단의 「부동산 및 자동차 자산보유 기준」참조)

■ 201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구 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기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4,007,671원이하	4,447,007원이하	4,709,765원이하	5,060,812원이하	5,411,859원이하	5,762,906원이하

- ※ 8인초과 가구 소득기준: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5,762,906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351,047원) 추가
- ※ 소득관련 증빙서류는「소득입증 증빙서류」를 참조하고 기타 소득관련 사항은 국토해양부의「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조회방법 : 국토해양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지침조회) 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120% 이하를 인정하는 부분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만 해당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시 일반공급의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결정 순차」를 따르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됨
-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함
- ·신청주택의 동·호수 배정은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함
- ・별도의 예비입주자는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된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1.11.18) 현재 삼척시 거주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무주택세대주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자
- ②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1순위자(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③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시 그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피부양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동산(토지+건물)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공고문 상단의 「부동산 및 자동차 자산보유 기준」참조)
- ※ (예시1) 세대주는 주택을 소유한 적 없이 세대주기간이 6년이고 노부모 소유의 주택을 4년전 처분한 경우 세대주의 무주택세대주기간은 4년임
- ※ (예시2) 세대주가 만65세 이상 노부모(장모, 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된 친부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세대주 전원이 무 주택요건을 만족하지 못함에 따라 세대주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 ※ (예시3) 노부모, 누나(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본인 및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와 본인과는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 로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됨에 따라 누나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신청이 가능함

■ 당첨자 선정방법

- ·별도의 예비입주자는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된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신청주택의 동·호수 배정은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함
- •과거 노부모부양 우선공급과 달리 낙첨시 자동으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기회가 부여되지는 않음

일반공급 신청자격, 순위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1.11.18) 현재 삼척시 거주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조건을 만족하는 자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동산(토지+건물)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공고문 상단의 「부동산 및 자동차 자산보유 기준」참조)
- ② 전용면적 60㎡이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소득기준을 총족한 자(전용면적 74㎡, 84㎡ 신청자는 해당 없음)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자
 - ※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만20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기준은 가구원수에 따
 - ※ 가구당 소득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전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소득 합산이며, 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만20세 이상 '직계존비속'의 소득도 합산
 - ※ 소득입증관련 증빙서류는 하단의 「당첨자 제출서류 안내」의 "소득입증 증빙서류"를 참조하고 기타 소득관련 기준은「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 침」을 준용함. 단, 신혼부부특별공급과 달리 배우자소득이 있더라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 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는 세대주로 간주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순위

순위	순위별 자격요건					
제1순위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제3순위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청약저축과 관련은 없음)					

- ※ 제3순위는 무주택세대주이면 신청가능(자산보유기준 충족해야 하며, 60㎡이하 신청자는 소득기준도 충족하여야함)하나 제1순위와 마찬가지로 당첨 시 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명단 관리됨
-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11조에 의거 금회공급주택은 수도권외 비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2순위청약대상자는 없음
- ※ 선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후순위자 접수일에 접수할 수 없음
- ■제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아래 「동일순위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결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제3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 우는 추첨에 의함)

동일순위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

- 가.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 나,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다. 저축총액이 많은 자 라. 납입횟수가 많은 자 마. 부양가족이 많은 자
- 바.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거주기간이 동일하여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에 의함)
- ※ 기간산정시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 ※ 기간산정시 세대주인정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 (무주택 세대주기간 산정 예) 무주택기간이 7년이고 세대주기간이 5년인 경우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5년임
- ※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람
- ※ 부양가족 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 세대주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중 아래에 해당되는 자
 - **배우자**는 주민등록의 분리와 무관하게 부양가족으로 인정
 -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 세대주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 직계존속의 경우, 신청 세대주의 직계존속만 해당되며(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제외됨),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이상 계속하여 신청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 직계비속의 경우, 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계속하여 신청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와 동 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 또한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의 당첨자선정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당첨자에 대한 동·호는 무작위로 추첨함
- · 동별·충별·향별·측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순위(1순위, 3순위)를 구분하여 접수받고,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5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차순위 신청접수를 받음(단, 3순위까지 신청접수한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50%에 미달하는 경우는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최대 5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 주자를 선정함(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5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함)
- •단,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하며,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며, 이 경우 계약체결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예비입주자는 신청형별 접수자 전원을 대상으로 앞에서 언급된 「동일순위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에 따라 선정함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청약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특별공급(개발 지구 철거주택 세입자, 지자체 철거민, 장애 인,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군인, 우수기능인, 공무원, 중소기업근로자, 납북피해자, 국가유 공자, 다문화가정 등)	2011.11.24(목) (10:00~18:30)	방문신청 (인터넷 신청 불가)	분양사무실 현장사무소 내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225번지)
7201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부부 특별공급 2011.11.24(목) 최초 특별공급 (10:00~18:30)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www.myhome.LH.or.kr)
이비고그	4.4.01 0.4.01	2011.11.25(금)	인터넷 신청 (방문신청 가능)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www.myhome.LH.or.kr)
일반공급	• 1순위, 3순위	(10:00~17:00)	인터넷 신청 (방문신청 가능)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www.myhome.LH.or.kr)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접수는 청약자의 편의도모 및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되, 인터넷 사용이 불가한 노약자, 장애인 등에 한하여 분양상담실에서 현장접수가능
- · 주택형별로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없이 신청 접수함

인터넷 청약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인터넷 신청방법

- •신청자가 착오로 청약신청을 잘못한 경우 그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결과에 대해서는 신청자본인의 책임임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청약을 하시기 바람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신청을 할 수 있음

■ 특별공급(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LH 홈페이지 접속(www.LH.or.kr) ⇒ 좌측의 「분양임대 청약시스템」(myhome.LH.or.kr) 클릭 ⇒ 인터넷청약(아파트청약 바로가기) 클릭 ⇒ 인터넷청약신청 ⇒ 청약지구선택 ⇒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특별순위 신청 선택 ⇒ 특별공급구분 선택 ⇒ 서약서 작성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일반공급

LH 홈페이지 접속(www.LH.or.kr) ⇨ 좌측의 「분양임대 청약시스템」(myhome.LH.or.kr) 클릭 ⇨ 인터넷청약(아파트청약 바로가기) 클릭 ⇨ 인터넷청약신청 ⇨ 청약지구선택 ⇨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일반순위 신청 선택 ⇨ 무주택서약서 작성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인터넷 신청시 유의사항

- •인터넷으로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를 확인할 경우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는 국민은행 홈페이지 (www.kbstar.com), 국민은행 외 가입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 후 입력하시기 바람
- 당첨자 선정시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금액 및 회차 기준이 아닌 국민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순위확인서)의 금액 및 회차 기준으로 산정하오 니 착오 입력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구 분	조회방법		
국민은행 가입자	국민은행 홈페이지 접속(www.kbstar.com)		
국민은행 외 가입자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접속(www.apt2you.com) ⇨ 순위확인서 발급		
인터넷이 불가능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회차 확인		

■ 청약시간 안내

- ·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능함
- •공사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음

분양상담실 방문 청약(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 및 노약자 등 인터넷 사용 불가자)

■ 현장접수 방법

•해당 신청일에 세대주 본인(배우자 포함)이나 대리인이 현장접수장소(LH삼척도계 건설현장내 분양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하단의 청약자제출서류의 공통서류를 반드시 포함하여 청약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현장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당해지역 거주여부, 신청순위, 재당첨제한여부,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라며, 당첨되더라도 계약시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시 계약체결 불가,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명단관리 등 불이익을 받으니 입주자모집공고상 청약자격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람
- •신청접수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기타 부정한 방법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청약자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제출서류 유의사항	
	① 공급신청서 및 서약서 등	● 접수현장에 비치	
공통서류	② 국민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순위확인서)	● 신청자가 구비하는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로서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발급(www.apt2you.com)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및 일반공급 3순위는 제외	
	③ 세대주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④ 세대주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 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⑤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⑥ 세대주 기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제출	
	① 신 분증 및 도장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도장은 서명으로 대체 가능	
기관추천 특별공급	① 가족관계증명서	• 단독세대주 및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시	
다자녀가구	① 피부양직계존속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 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② 세대주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세대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노부모부양	① 피부양직계존속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 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포구모구장	② 피부양직계존속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① 세대주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신고일 확인	
	② 세대주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③ 자녀의 기본증명서	• 출생관련일자 확인필요시 제출	
신혼부부	④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2277	⑤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입양의 경우 제출	
	⑥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도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⑦ 소득입증 증빙서류 참조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민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① 세대주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상에서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②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도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생애최초	③ 소득입증 증빙서류 참조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주민등록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 세대주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① 건강보험 자격확인서(59㎡형 신청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공급	② 소득입증 증빙서류 참조(59㎡형 신청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신청자)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추가서류 배우자가 신청시 • 배우자 신분증, 청약자 도장, 배우자 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			
(대리신청시)	제3자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청약자 인감증명서, 청약자 인감도장	

- ※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및관계, 세대구성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등이 표시되도록 발급받으시어 자격확인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당첨자발표, 인터넷 청약 당첨자 서류제출,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중 인터넷 청약자는 아래 당첨자서류 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함
- •특별공급•일반공급 당첨자명단,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당첨자명단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착오방지를 위해 전화응답은 하지 않음)
- ·당첨자 확인 : LH 홈페이지(www.LH.or.kr) ⇨ 좌측「분양·임대 청약시스템」(myhome.lh.or.kr) ⇨ 하단의「아파트 당첨자 조회」

청약대상자	당첨자발표	인터넷 청약 당첨자 서류제출	계약체결	장소(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공급	2011.12.09(금) 14:00 이후 LH홈페이지	2011.12.13(화) ~ 14(수) (10:00~17:00)	2011.12.19(월) ~21(수) (10:00~17:00)	LH현장사무소 내 분양상담실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225번지)

제출서류 추가안내

▋ 공통 안내사항

- •인터넷 신청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함
- •인터넷으로 청약한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청약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 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됨(직계존비속 포함)

■ 인터넷 신청 당첨자 제출서류

•인터넷으로 청약하여 당첨된 당첨자는 상기의 청약자 제출서류 및 하단의 소득입증서류를 제출기한내 제출하여야 함

■ 소득입증 증빙서류(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일반공급(전용60㎡이하만 해당))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서류구분	해당여부		해 당 자 격	소 득 관 련 제 출 서 류	발 급 처
		근 로 자	일반근로자	①재직증명서 ②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 액증명서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 세 원천징수 확인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①해당직장 ②해당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재직증명서 및 해당직장 시업자등록증 사본 ②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 징수증명서 ③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①②해당직장 ③국민연금공단
	신혼부부,		전년도 전직자	①재직증명서 ②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직장
	생애최초, 일반공급(전용60 ㎡이하) [공통]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지만 해당)	①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 날인 된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해당직장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시업자등록증명(재교부시) ②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세무서
지격입증 및 소득증빙 서류		자 영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①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업자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재교부시) ②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①세무서 ②국민연금관리공
			법인사업자	①법인등기부등본 ②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①등기소 ②세무서
	신혼부부, 일반공급(전용60 m'이하)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①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 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②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해당직장/세무서
				①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1)계약기간 및 총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1)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 인서)	①해당직장 ②국민연금공단
				①비사업자 확인 각서 (공사소정양식)	접수장소비치
	생애최초	과거 1년이내 소득세 납부자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에 한함)		①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종합 소득세 소득금액증명 (1년 이내 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해당직장/세무서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생애최초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 과거 1년 이내 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세사실증명(종합소득금액증명 제출자에 한함) 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④일용근로자 소득금액증명	①세무서 ②해당직장 ③해당직장/세무시 ④세무서

계약체결 구비서류 안내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계약이 불가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구 분	구비사항		
본인 및 배우자 계약체결	 주택공급신청 접수증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지참(배우자가 방문시 청약자 및 배우자 신분증 지참) 계약금은 LH계좌(농협중앙회 275-01-152715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로 납부하고 입금증 원본제출 당첨자의 인감도장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 구비서류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서류 추가 제출 •당첨자 인감증명서 1통 •당첨자(계약자) 인감도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위임장(계약장소에 비치)		

.

유의사항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정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자산기준 초과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통보한 날부터 10일)내에 소명자료(증명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을 취소함(계약불가, 당첨자명단 관리,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단, 해당 소명기간내에 부적격사유가 고의성이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신청접수 후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인자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대상자별, 순위별(제1·3순위)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신청 및 계약체결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자격(제1·3순위)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특별공급 당첨 자는 향후 특별공급이 제한되고(특별공급은 1회에 한정됨) 제1순위 당첨자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계약체결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이 주택의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당해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전매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됨(단,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임대주택 거주 중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우리공시에 명도하여야 함
- •예비입주자가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음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LH홈페이지(www.LH.or.kr ↔ 좌측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고객서비스 ☆ 계약자주소변경)에서 수정하거나 우리 공사 강원지역본부 영동사업단으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임



단지 여건 등

■ 단지 여건

- 분양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계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과 조명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일부세대의 경우 이사 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음
- 입면 디자인을 위해 발코니턱, 난간, 창대석 등은 동일 주택형이라도 호수별로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램프 포함)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유아놀이터,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등 부대복리시설에 인접한 동은 소음 등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람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음
- 부대시설과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현장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 주체가 변경승인 등을 진행할 수 있음.
- 계약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 본 단지의 브랜드명은 LH 자체 브랜드명을 사용할 예정(브랜드명 미정)이며, 그 외 시공회사 등의 브랜드명은 사용이 불가함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하며, 입주지정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20일간임.
- 202동과 203동은 다른동 보다 주거세대가 한층 높이 위치함
- 주차장은 주동통합형 지하주차장임
- 부대복리시설의 내역

시설내역	주요시설		
부대시설	지하주차장, 가스공급시설, 경비실, 주민지원센터 등		
복리시설	휴게시설, 작은도서관, 경로당, 보육시설, 주민공동시설, 피트니스 등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발코니 확장부분은 세대별 조건(측세대, 중간세대, 세대조합등) 및 필수설비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대피공간의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 실내환기는 제2종 환기방식을 적용할 예정임
- 3~10층 세대는 대피공간에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음.
- 마감재내역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팜플렛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팜플렛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 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음
- 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팜플렛 등에 기재된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동등이상의 타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금회 공급주택의 공용부위, 실내마감재 중 미표기 사항, 외부환경디자인 등 팜플렛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설계방식에 따라 유사한 품질수준 내에서 변경 또는 각 공급블록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팜플렛 등에 적용된 자재 중 성능향상을 위하여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될 수 있음
- 삼척도계 2공구 내 및 그 외 타지역의 타사 또는 LH 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안내

■ 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 중 **만65세 이상 노인, 3급 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계약시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드림

구분	설치내역	제공대상	구분	설치내역	제공대상
현 관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지체장애인	주 방	가스밸브 높이조정, 좌식 씽크대(물버림대)	지체장애인
	바닥단차 제거, 출입문 규격확대, 좌식샤워시설, 좌변기 안전손잡이, 수건걸이 높이조정	고 령 자 지체장애인	거실	비디오폰 높이조정, 야간센서등(벽부센서등)	지체장애인
욕 실				시각경보기	청각장애인
	높낮이조절 세면기	지체장애인	주동·통로유도시설	음성유도신호기	시각장애인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설명자료 예시, 신청서 등은 계약장소(분양사무실)에 비치함

■ 신청시 구비서류: ①장애인수첩, 증명서 또는 진단서 1부 ②주민등록표등본 1부

■ 신청시기: 계약시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한국토지주택공사 (221-82-13374)	(주) 대 명 건 설 (220-81-04050)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자체감리

■ 벌칙 등

- •당해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자의 통장을 사 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취소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함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임대 주택법 제22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이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고객상담실(1600-10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 •전화상담 및 분양상담실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름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음

분양사무실 및 분양홈페이지 안내

분양 사무실 (건설현장 사무소내) ● 도계휴계소 ● 강원대도원관 블랙밸리CC 도계우체국 도계읍주민센터 노체 도계중학교 도계고등학교 장원초등학교 농협 ● 하나로마트본점 도계체육관 🦳 도계역 태백 도계시외버스터미널

■ 분양사무실 안내

소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225일원

- 운영기간: 2011.11.18(금) ~ 12.30

※ 토요일, 일요일 및 국경일은 제외

※ 직원은 청약접수, 서류제출, 계약체결기간만 상주함

- 오시는 길

■ 열 차 : 도계역 하차 - 택시(5분 소요)

■ 버 스 : 도계버스터미널 하차 - 택시(5분 소요) · 삼척출발 - 도계도착 : 30분 간격(07:10~22:50) · 태백출발 - 도계도착 : 40분 간격(06:00~20:50)

· 강릉출발 - 도계도착 : 50분 간격(06:40~21:40)

분양홈페이지 분양 문의

■ 주소: www.LH.or.kr

■ 운영기간 : 2011. 11. 18(금) ~ 분양종료시 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분양사무실 전화번호: 033)000-0000 영동사업단 전화번호: 033)610-5152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문의 전화 등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지역본부 영동사업단